



REASONABLE ACCOMMODATION POLICY FOR TENANTS, HOUSING APPLICANTS AND SECTION 8 VOUCHER HOLDERS

입주자, 주택 신청자 그리고 섹션 8 인턴권 소유자를 위한 적절한 조처 정책

장애인으로서 뉴욕시 주택청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가하는데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기위해 적절한 조처를 필요로 하는 자격있는 입주자, 신청자 그리고 섹션 8 인턴권 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처를 제공하는것은 뉴욕시 주택청 ("NYCHA")의 정책입니다.

신체, 의료,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예를 들면 거동, 숨쉬기, 청력 또는 시력 장애,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누구든지 적절한 조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조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로부터 얻는 이익에 정상인이 갖는 것과 같이 자격있는 장애인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절차, 훈련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청에 의해 고려되는 조처는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 또는 관리 부담 또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귀하의 아파트, 단지 마당, 귀하의 아파트 건물이나 주변의 공동 사용 구역 수정; 뉴욕시 주택청의 프로그램, 정책, 설비 수정; 다른 아파트로 이주. 몇가지 적절한 조처의 예를 들면,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 청력, 시력 장애자에게 유자격 수화 통역자, 점자로된 문서 또는 다른 방도로 정보 이용과 교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거동 부자유자에게 아파트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 정신 장애 입주자를 대신해서 제 삼자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 숨쉬기나 호흡기 장애인에게 추가 에어컨디셔너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또는 섹션 8 인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귀하의 적절한 조처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으로 부터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귀하의 요청에 대해 대안 조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처가 승인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알맞는 비용, 균등 주택 기회의 장애를 줄이는데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인지, 그리고 그것이뉴욕시 주택청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꿀지 아닐지에 근거합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매 적절한 조처 요청을 별개의 요청으로 취급합니다. 한 개인의 조처 요청이 승인되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형태의 모든 요청이 승인될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매 개인의 요구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께서 장애때문에 조처가 필요하다고 믿거나, 또는 장애 또는 적절한 조처에 대한 설명,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 공공주택 입주자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30 부터 오후 4:30 까지 자기의 관리 사무실, 또는 뉴욕시 주택청 기회 균등부 ("DEO"), 장애자 서비스과로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30 부터 오후 5:00 까지 전화 212-306-4652, 또는 TTY 전화 212-306-484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뉴욕시 주택청 직원이 조처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당신의 의사에게 뉴욕시 주택청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http://www.nyc.gov/html/nycha/html/community/equalopp.shtml> 으로 부터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섹션 8 참가자와 공공주택 신청자는 뉴욕시 주택청의 고객 접촉 센터 전화 (718) 707-7771, 아래에 열거된 자기의 지역 뉴욕시 주택청 워크인 센터, 또는 뉴욕시 주택청 기회 균등부 ("DEO"), 장애자 서비스과로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30 부터 오후 5:00 까지 전화 212-306-4652, 또는 TTY 전화 212-306-4845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뉴욕시 주택청 직원이 조처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양식과 당신의 의사가 뉴욕시 주택청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르클린/스태튼 아일랜드 고객 접촉 센터:
 787 Atlantic Avenue, 2nd Floor
 Brooklyn, NY 11238

브롱스/맨하탄 고객 접촉 센터:
 478 East Fordham Road, 2nd Floor
 Bronx, NY 10458

당신이 입주자인 경우에는 단지 관리자나 감독자가 당신의 요청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신청자인 경우에는 Applications and Tenancy Administration Department 관리자나 감독자가 당신의 요청을 검토하고, 섹션 8 수혜자인 경우에는 Leased Housing 대표자가 당신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만약 뉴욕시 주택청이 당신의 요청을 5일 이내에 허가하지 않으면 당신의 요청은 공공주택 적절한 조처 책임자나 섹션 8 적절한 조처 책임자에게 알려지고, 뉴욕시 주택청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한 그들은 30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만약 뉴욕시 주택청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면 뉴욕시 주택청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결정에 대해서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문의 적합한 란에 표를 해서 통지문 받은지 30일 이내에 뉴욕시 주택청으로 되보냄으로 불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73년의 재할법 504조, 1968년의 공정 주택법, 1988년의 수정 공정 주택법, 1990년의 장애 미국인법 그리고 2008년의 수정 장애 미국인법, 그리고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법에 따랐습니다.

입주자, 섹션 8 참가자 또는 신청자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 열거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 인권기관에 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p>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ew York Regional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공공주택청 기획 균등부뉴욕 사무소</p> <p>26 Federal Plaza, Room 3532 (212) 542-7519 1-800-496-4294 TTY (212) 264-0927</p>	<p>U.S. Department of Justic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formation Line 미국 법무부 장애인법 관련 법 연락처 (800) 514-0301 (voice) (800) 514-0383 (TTY)</p> <p>U.S. Department of Justice Housing Discrimination Line 미국 법무부 주택 차별 문의 연락처 (800) 896-7743 E-mail: fairhousing@usdoj.gov</p>
<p>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뉴욕시 인권위원회 22 Reade Street, First Floor New York, NY 10007 (212) 306-7450</p>	<p>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인권 분과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 TDD: 1-718-741-8300</p>

본 정책의 사본은 요청에 의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번역본은 온라인으로 입수 가능합니다
www.nyc.gov/nycha

